
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련
행정사무 처리 및 상황 보고 요구서



충청남도의회

[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]

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 처리 및 상황 보고 요구의 건

□ 주 문

-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에 대한 (자체) 지도·감독·점검 계획 수립·추진 및 결과 보고 요구

□ 제안이유

- 「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17조(지휘·감독) 및 「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(수탁기관의 관리·감독)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은 소관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.
- 이에 ‘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’에서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조사(질의·답변 등)를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및 「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」 제43조(출석요구 및 답변)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각 소관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에 대한 (자체) 지도·감독·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, 그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함.

□ 참고사항

- 「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17조(지휘·감독)
- 「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(수탁기관의 관리·감독)
-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
- 「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」 제43조(출석요구 및 답변)

붙임 지도·감독 계획 수립·추진 및 결과 보고 요구서 1부. 끝.

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 처리 및 상황 보고 요구서

- ‘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’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조사(질의·답변 등)를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및 「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」 제43조(출석요구 및 답변)에 따라 행정사무의 처리 및 상황에 대한 보고 등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○ 요구 내용

- 「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17조(지휘·감독) 및 「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(수탁기관의 관리·감독)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은 소관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·점검 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, 그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.

○ 결과 보고 요구

- 보고회의 : 「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」 제5차 회의
단, 보고일정에 따라 회의 차수 추가될 수 있음
- 보 고 일 :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* 중 제5차 회의일**
 - * 활동 기간 : 위원 선임일('23. 2. 21.) ~ 2023. 12. 31.
 - ** 제5차 회의 : 2023. 6. 8.(목) 10:30 ~
 - ※ 일정 변동 시 별도 통보하며, 통보된 날을 보고일로 함.
- 보고장소 :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(202호)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실(205호)
- 보 고 자 :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계 공무원
- 보고내용 :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·점검 결과 및 처리 상황 등

□ 「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」

제17조(지휘·감독)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취소·정지·시정 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.

□ 「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18조(수탁기관의 관리·감독)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·감독하여야 하며, 매년 1회 이상 관련 서류, 시설 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·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·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,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」

제43조(출석요구 및 답변) ①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(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)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장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도지사, 교육감
2. 부지사, 부교육감
3.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·국장, 담당관, 실·과장급
4.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의 장

5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
 6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
 7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도본청의 실·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
 8. 제5호 및 6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·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
 9.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
 10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법인의 임원
 11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자를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